

# 2021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1년 상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I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 ① 긴급 경영 컨설팅

1. 지원목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2. 지원규모: 3,500건 내외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 4. 지원제외: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2)
  -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5. 지원내용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컨설팅 4일 기준 1,200천원(1일 300천원)소요, 자부담금 120천원 발생

- 단,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 자부담 무료조건(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

자부담 무료 조건	비고
① 간이과세자	
②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포함) 중 최근 1년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③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④ LH 희망상가 입점소상공인	
⑤ 지역경제위기지역 소상공인	상세내용 '첨부3' 참조
⑥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⑦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지원횟수) 연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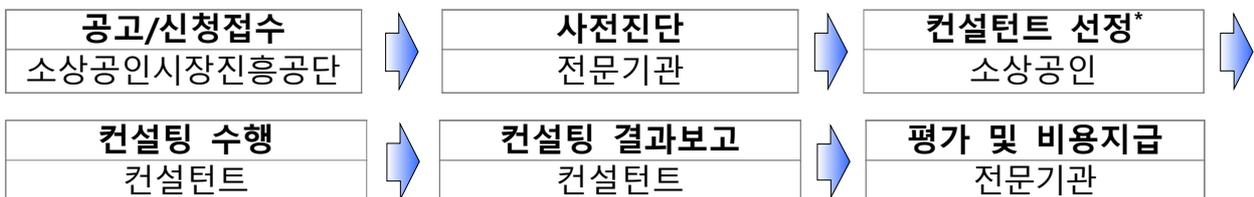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 1회로 제한

- (주요내용)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

구분	내 용	지원일수
지원업종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1~4일
지원분야	경영 •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안전·보건 관리 등	
	브랜드·디자인 •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법률 •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등	
	기술 • 상품 및 메뉴 개발, 이·미용 비법 전수 등	
	투자·디지털 전환 •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투자·펀딩 등	

- (지원절차)



\* 컨설턴트는 신청 정보 및 진단 결과 검토 후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수행을 제안 하고, 소상공인이 선택하여 매칭

## ② 창의 육성 컨설팅

1. 지원목적: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실질적인 지원책 제공으로 창의 소상공인 발굴·육성

2. 지원규모: 1,500건 내외

3. 지원대상: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4. 지원제외: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팅으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5. 지원내용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 60만원(국비 100%) 및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최대 200만원 이내\*(국비 80%, 자부담 20%), 연 1회 지원

\* (예시)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비용 200만원 기준 : 160만원 국비 지원, 40만원 자부담 발생

\*\* 긴급 경영 컨설팅과 창의 육성 컨설팅 중복 지원 불가하며 단, 창의 육성 컨설팅 신청 후 미지원된 경우 긴급 경영 컨설팅 신청 가능

○ (지원횟수) 연 1회(평가 후 선정)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 1회로 제한

○ (주요내용)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 (①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 진단, 실행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 등을 전문기관 매칭을 통해 지원
- (②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제품 가치 향상, 디자인·마케팅 강화, 법률 지원, 스마트 전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

< 지원항목(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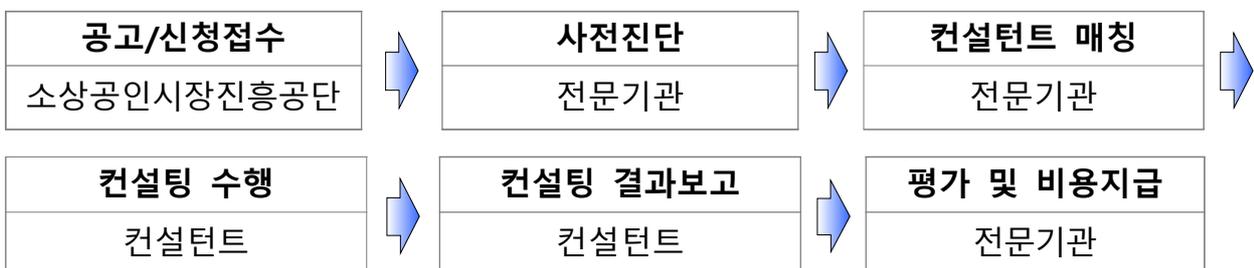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지원금액
제품 가치 향상	브랜딩, 디자인 개발, 신제품 및 메뉴 개발, 상품 기획 등	최대 200 만원 이내
판로 창출	SNS 마케팅, 온라인몰 입점 등	
스마트 전환	배달앱 입점,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정보화 구축 등	
경영·기술 혁신	경영 전략 수립, 구조개선, 인증 획득, 제품 시험 등	
법률 지원	특허,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등	
점포 개선	간판, 점포 리모델링,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	

- (선정방법) 시행 공고 후 소상공인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첨부 4)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의 아이디어 심사를 거쳐 선정

< 선정평가 항목(안) >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내용	배점
아이디어의 적절성	·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지원항목 필요성 - 사업화 관련 아이디어 우수성 - 사업수행 타당성	20
	· 아이디어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전략	30
아이디어 실현 능력	· 대표자 마인드 및 가치관	- 개척의지, 실행의지, 자부담 능력 등 대표자 보유역량	20
	· 아이디어 실현 후 경영 개선 가능성	- 지원 효과성 및 성과창출 전략 - 성장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30

- (지원절차)



□ 신청기간

- (긴급 경영 컨설팅) '21. 4. 26.(월)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창의 육성 컨설팅) '21. 4. 26.(월) ~ '21. 5. 25.(화)

□ 신청방법: 온라인(con.sbiz.or.kr) 신청·접수

\*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가능

□ 신청서류: 아래 공통서류 제출(창의 육성 컨설팅 또는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추가서류 제출)

- (공통서류) 지원대상 증빙이 가능한 제출서류를 신청 시 첨부

지원대상	제출서류(필수)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상시근로자가 <b>있는</b> 경우 ① <b>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b>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② <b>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b> ③ <b>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b> ④ <b>소상공인확인서</b> - 상시근로자가 <b>없는</b> 경우 ① <b>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b> ② <b>소상공인확인서</b>
	매출액 확인서류	<b>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b> 또는 <b>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b> ('21.1.1.이후 창업한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필요)
<b>예비창업자 (택 1)</b>	① 신청일 기준 사업개시일 이전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 예) 신청일이 '21.2.26.이나, 사업개시일이 '21.3.3.인 경우 ②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 건물인 경우)	

- (추가서류) 창 의 육성 컨설팅 신청 경우 또는 긴급 경영 컨설팅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경우 아래의 추가서류 제출

**① 창 의 육성 컨설팅 신청 시 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창 의 육성 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사업수행계획서(7장 이내)(첨부4 참고)

**② 긴급 경영 컨설팅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제출**

자부담 무료조건	제출서류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일반과세자(면세 사업자 포함) (최근 1년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 아래서류 중 1부 제출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세기간 1년 이상 명시)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과세기간 1년 이상 명시) * 위 증명원 상 기재된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자부담 유료	
3.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 지정 인증서	
4. LH 희망상가 입점소상공인	LH 희망상가 입주계약서	
5. 지역경제위기 지역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첨부3'에 해당하는 경우 (※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로 확인 가능, 추가 제출 불필요) * 대상지역 및 지정기간에 따라 운영하며,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대상지역 및 지정기간)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6.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협약이 체결된 15개 은행*에서 발급한 은행추천서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div>	
7.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창업 1년 미만 창업자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로 확인 가능, 추가 제출 불필요
	예비창업자	※ 아래서류 중 1부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 신청 유의사항

- 당해연도 소상공인컨설팅 신청(신청인 기준)은 1회만 가능함
- 긴급 경영 컨설팅과 창의 육성 컨설팅 중복 지원 불가. 단, 창의 육성 컨설팅 신청 후 미지원된 경우 긴급 경영 컨설팅 신청 가능
- 특수업종·분야(과제)에 대한 컨설팅 요청 시, 해당 지역 컨설턴트 Pool에 전문가가 없을 경우 컨설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사정(병원입원, 연락두절 등)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 완료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경과 시 취소 조치함
- 자부담금 납부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미입금 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함
- 컨설턴트 선정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신청인이 컨설턴트 선정을 하지 않을 경우 취소 처리함
- 신청인이 컨설팅 신청 취소 후 재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연도 사업 재신청은 1회로 한함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또는 권역별 전문기관

구분	권역	권역별 전문기관 연락처
1	서울강원	02-724-1245
	대구경북	
2	경기인천	070-7404-8481
3	대전충청	044-867-9954, 042-829-7995
4	광주호남	1588-0700
5	부산울산경남	02-6240-4805, 02-6240-4807

- 첨부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
  3. '21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자부담 무료조건
  4. 창의 육성 컨설팅 사업계획서
  5. 신청서류별 제출요령
  6. '20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b>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b> 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지역경제 위기지역

(2021. 4. 21. 기준)

구분	지역	지정기간
고용위기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목포, 영암	~21.12.31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 '21.05.28
	군산	~ '22.04.04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대구, 경산, 청도, 봉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시·군·구(38개)	경기	안성시, 이천시·연천군·가평군
	전북	남원시,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전남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충북	충주시·음성군·제천시, 영동군·단양군
	충남	아산시·천안시, 금산군·예산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산청군·함양군·거창군
	강원	철원군, 화천군·양구군·인제군
	광주	북구·광산구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읍·면·동(36개)	광주	남구효덕동·대촌동, 동구학운동·지원2동, 서구유덕동·서창동
	대전	동구중앙동
	경기	용인시 백암면·원삼면, 포천시 이동면·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면·남면·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면·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면·신덕면, 고창군 아산면·공음면·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면·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면·부림면

별도  
해제시까지

<첨부 4>

**「2021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창의 육성 컨설팅」  
사업수행계획서**

상 호 명	설립일	년	월	일	
신청항목	<input type="checkbox"/> 제품 가치 향상 <input type="checkbox"/> 경영기술 혁신	<input type="checkbox"/> 판로 창출 <input type="checkbox"/> 법률 지원	<input type="checkbox"/> 스마트 전환 <input type="checkbox"/> 점포개선		
회사소개	※ 회사의 비즈니스모델, 당사의 주요 경쟁력, 차별점 등을 위주로 작성				
경영개선노력 (현황)	※ 당사가 속한 시장의 환경분석, 사업 관련 기반 확보 등 경영개선을 위한 사전 준비				
지원배경 및 지원필요성	※ 사업을 신청하게 된 이유, 경영개선에 지원이 필요한 이유 등을 포함하여 작성				
수행계획 및 세부목표	※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를 위한 세부적인 수행계획과 매출, 시장성 제고, 이미지 개선, 수요창출 등 예상 성과목표 작성				
향후 계획	※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이후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신청서류별 제출요령

□ (공통서류) 필수제출

제출서류	발급처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또는 ☎1577-1000 연락 후 팩스 발급 요청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자료제출하기 → 제출자료 조회하기 → 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서 제출 → 확인서 출력
사업자등록증(사본)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보유 중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가 건물인 경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추가서류)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추가 제출 불필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 인증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LH 희망상가 입점소상공인	LH 희망상가 입주계약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지역경제위기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추가 제출 불필요)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협약이 체결된 15개 은행*에서 발급한 은행추천서	추천 은행에서 온라인 업로드 (추가 제출 불필요)
창업 1년 미만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1년 미만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예비 창업자 (택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가건물 소유)

## 2021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2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285,000	78,833	37,298	79,111
2인	3,860,000	132,671	123,060	134,046
3인	4,980,000	171,997	177,349	174,422
4인	6,095,000	209,941	224,984	213,469
5인	7,197,000	246,992	271,376	252,295
6인	8,286,000	286,737	318,891	296,707
7인	9,371,000	321,769	356,168	337,302
8인	10,457,000	380,152	420,252	414,255
9인	11,543,000	414,255	456,308	461,977
10인	12,629,000	449,388	494,952	486,115

※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임

※ 판단방법

가. 2인 가구, 가구원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2인 모두 직장가입자일 때, 보험료 합산액 132,671원까지 소득요건 충족
- 2인 모두 지역가입자일 때, 보험료 합산액 123,060원까지 소득요건 충족
- 직장가입자 1인 지역가입자 1인일 때, 보험료 합산액 134,046원까지 소득 요건 충족

나. 3인 가구, 직장가입자인 경우(기준:171,997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0,000원일 때, 소득요건 충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5,000원일 때, 소득요건 미충족